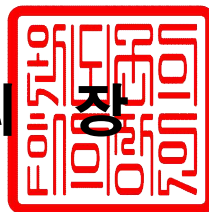


##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완도군 도시계획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3년 3월 3일

완 도 군 의 회 의 장



1. 조 례 명 :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발 의 자 : 최정욱 의원, 박재선 의원

3. 제정이유

-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규제 완화로 주민의 농어업 등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

#### 4. 주요내용

○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과 창고에 대한 태양광 설치시설 규제 완화

현행	개정안
창고, 버섯재배사, 곤충과 지렁이 사육사등 농업관련시설 신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를 주 목적으로 <u>5년 이상 사용</u> 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	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과 창고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<u>사용승인일로부터 신청일 기준 2년 이상</u> 해당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<u>완도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법인</u> <u>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</u> 한하여 설치 가능

5. 관련법령 :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

6. 조례안 예고기간 : 2023. 3. 3. ~ 2023. 3. 8.

#### 7. 의견제출

-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회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# 가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· 주소 ·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(의정지원팀)

-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/ (우) 59121

(전화: 061-550-5936, FAX: 061-550-5907)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서면 · 전화 · 팩스 · 직접방문 등

## 8. 기타

○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팀(전화: 061-550-5936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
2.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안 예고명	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의견 제출자	성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
	주소		

## 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

--

「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.

년 월 일

제 출 자

(서명 또는 인)

완도군의회 의장 귀하

##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6호”를 “제5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것(창고, 버섯재배사, 곤충과 지렁이 사육사등 농업관련 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를 주 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.)”을 “것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 1]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과 창고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완도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법인등록을 두고 있을 것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<신 설>

② ~ ⑤ (생 략)

7.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 1]

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과 창고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해당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완도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법인등록을 두고 있을 것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###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

1-2-2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(이하 "허가권자"라 한다)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, 법 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도시·군계획조례를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은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